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I. 개 요

1. 세 입

(1) 세입규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일반회계)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40%인 34억 6,399만원이 증가된 502억 6,653만 9천원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50,266,539	46,802,549	3,463,990	7.40

(2) 세입내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 지방세수입에서 9억 3400만원 증액
- 세외수입에서 12억 8,693만 5천원 증액
- 지방 교부세에서 2,000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억 1,972만원 증액
- 보조금에서 11억 33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 출

(1) 세출규모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일반회계)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76%인 23억 2,375만 7천원이 증가된 367억 162만 4천원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36,701,624	34,377,867	2,323,757	6.76

(2) 세출내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기획감사실	13,922,531	13,873,685	48,846	0.35
정보홍보담당관	784,843	771,972	12,871	1.67
총무과	5,527,590	5,495,593	31,997	0.58
주민자치과	5,000,631	4,290,317	710,314	16.56
지방세과	332,965	327,533	5,432	1.66
경영회계과	669,518	534,506	135,012	25.26
민원봉사과	284,131	259,004	25,127	9.70
보건소	3,349,416	3,120,882	228,534	7.32
문예시설관리사업소	875,889	157,367	718,522	456.59
동	5,954,110	5,547,008	407,102	7.34
합 계	36,701,624	34,377,867	2,323,757	6.76

II. 검토의견

서구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공공요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보조금 구비부담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시 미반영 예산, 민선3기 역점 구정방침인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40%인 34억 6,399만원이 증액된 502억 6,65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76%인 23억 2,375만 7천원이 증액된 367억 1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분	증(△)감액
세 입	50,266,539	46,802,549	3,463,990	7.40
세 출	36,701,624	34,377,867	2,323,757	6.76

자세한 것은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종 업무추진비의 추경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표-1>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각종업무추진비가 이번 추경에 6,882만 8천원이 부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재정형편상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당초에 연간기준액의 20%를 절감 편성하였으나,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절감률을 하향하여(20%→10%)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비를 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경편성요건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불요불급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예산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성립후의 여건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이라 생각하며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성립 후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일단 의회가 삭감한 경비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1> 각종 업무추진비 부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 확보액			추가확보(안)	확보후 총액
	계	당초예산	1회 추경		
합 계	503,772	453,108	50,664	68,828	572,6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588	23,588	-	3,192	26,780
◦ 구본청	17,980	17,980	-	2,248	20,228
◦ 보건소	1,176	1,176	-	147	1,323
◦ 문예시설사업소	-	-	-	243	243
◦ 의회사무국	1,216	1,216	-	152	1,368
◦ 동 (14개동)	3,216	3,216	-	402	3,61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8,408	121,040	17,368	18,732	157,140
◦ 구청장	41,128	29,680	11,448	6,572	47,700
◦ 부구청장	29,600	23,680	5,920	3,700	33,300
◦ 총무국장	2,400	2,400	-	300	2,700
◦ 사회산업국장	2,400	2,400	-	300	2,700
◦ 도시국장	2,400	2,400	-	300	2,700
◦ 보건소장	2,400	2,400	-	300	2,700
◦ 의사국장	2,400	2,400	-	300	2,700
◦ 동장(14명)	55,680	55,680	-	6,960	62,6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576	125,280	33,296	21,424	180,000
◦ 구청장	97,776	70,560	27,216	13,824	111,600
◦ 부구청장	22,400	17,920	4,480	2,800	25,200
◦ 국장(3명)	16,800	16,800	-	2,100	18,900
◦ 보건소장	3,200	2,400	800	400	3,600
◦ 의사국장	3,200	2,400	800	400	3,600
◦ 기타	15,200	15,200	-	1,900	17,100
서구의회	105,920	105,920	-	14,200	120,120
◦ 의정운영공통경비	49,920	49,920	-	7,200	57,120
◦ 예결특위	8,000	8,000	-	1,000	9,000
◦ 기관운영(의장)	19,200	19,200	-	2,400	21,600
◦ 기관운영(부의장)	8,640	8,640	-	1,080	9,720
◦ 상임위원장(3명)	17,280	17,280	-	2,160	19,440
◦ 예결위원장(1명)	2,880	2,880	-	360	3,24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7,280	77,280	-	11,280	88,560

둘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¹⁾의 과다계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서구의회의 각종 업무추진비도 이에 해당되나 본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함.

집행부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연간기준액에 대한 절감률을 획일적으로 하향하여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과 제2회 추경안이 9월에 확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부의 획일적 하향을 조정에 따른 추경안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정시책업무추진비의 POOL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구정시책 업무추진비(2,142만 4천원)를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증액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을 예산운영(POOL)에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 확정결과를 토대로 각 직위별로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방법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은 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업무와 연계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예산의 성립전 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 예산의 성립전 집행액은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총 16건에 9,835만원으로서 소요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특별교부금에 의한 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상 모든 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예산의 성립전 집행입니다(지방재정법 제36조). 다만 이 제도는 재정에 관한 대원칙인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으로서, 그 요건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2> 예산의 성립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건수	집 행 내 역	비고
총 무 과	12건	·청사옥상 및 계양용 가로기 구입(7,500)	특별교부금
		·전국민 국기달기 운동 시상금(500)	
		·월드컵 대비 가로정비 및 특근자 급식(17,100)	
		·월드컵 준비상황 점검업무수행 여비(1,950)	
		·월드컵 D-1 일제대청소 성공기원 이벤트 울동팀 보 상(500)	
		·인사관리용 노트북 컴퓨터(2,000)	국비
		·발간실 냉·난방기(800)	
		·월드컵 전야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1,000)	
		·비엔날레 관람여비(5,800)	
		·서창만드리 풍년제 행사 지원(2,000)	국비
		·월드컵 붐조성 캠페인·이벤트 추진단체보조금(3,000)	시비
		·기초질서 실천운동(7,000)	
주민자치과	1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9,600)	국비
경영회계과	1건	·사무용 집기(의자) 구입(4,000)	특별교부금
보 건 소	2건	·구강보건소 설치 시설비(18,500)	국·시비
		·구강보건소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17,100)	
합 계	16건	98,350	

지 방 재 정 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행케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과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비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비 중 정부가 부담지원하는 금액은 예산의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은 자치단체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성립전 집행을 이처럼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하도록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성립전 집행이 재정의회주의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재정의회주의 원칙상 성립전 예산집행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제2회 추경안에 계상된 특별교부금에 의한 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요재원이 특별교부금이긴 하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상사업비로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상 성립전 사용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성립전 사용의 법정요건 구비와는 별개로 성립전 집행내역 중 월드컵 관련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인사관리용 노트북 컴퓨터(2,000)·발간실 냉·난방기(800)·비엔날레 관람여비(5,800)·사무용 집기(의자) 구입비(4,000)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본예산 심의 때마다 논란 대상의 하나였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40%(2천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사회 단체에 폭넓은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단체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자치구의 경우 연 2억 8,300만원을 기준상한액으로 정하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민·사회 단체의 재정지원 요청은 쇄도하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재정력은 여의치 못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서구청이 보조금을 지원한 임의보조단체는 1999년에는 14개 단체에 4,747만원, 2000년에는 19개 단체에 7,836만 4천원, 2001년에는 41개 단체에 1억 3,924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3개 단체에 4,126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단체와 지원액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표-3>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지원단체 수	14개	19개	41개	13개
지 원 액	47,470	78,364	139,245	41,263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도부터 임의단체 보조금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민주평통서구협의회,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서부모범운전자회, 서구 재향군인회 및 서구 장애인협회 등에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서구 재정력과 쇠도하고 있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의 재정지원 요청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특정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시민운동을 주도해 오고 서구발전에 기여해 온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감안하여 격년제나 윤번제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자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적정시점까지는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4>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임의보조단체

(단위 : 천원)

단 체 명	1999년도 지원액	2000년도 지원액	2001년도 지원액	2002년 지원액
민주평통서구협의회	13,320	23,510	13,600	1,500
서구생활체육협의회	5,600	6,100	10,000	11,763
5·18 기념행사위원회			1,000	500
대한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	10,000	10,000	10,000	7,500
연보존회		600	1,000	
서부모범운전자회	1,000	1,300	1,300	
(재)한국기원 광주본부		1,654	2,650	
광주YMCA 서구지회		7,000	2,000	
서구 재향군인회	2,000	5,500	2,000	2,000
6.25참전 동우회	1,000		1,500	2,000
서구장애인협회		7,000	15,500	7,500
서구보육시설연합회		3,500		500
광주·전남행정학회	3,800		1,000	
광주서구행정동우회		2,000	3,000	
광주청년회의소		3,000	500	
성균관유도회 광주서구지부	1,300	1,500		
광주·전남연합 기우회		500	3,000	